

2007

첫 번째 확대 간부 수련회에서

시작하는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첫 걸음

발제 _ 19대 총여학생회

경계에서 숨쉬는 색다른 가능성

〈Inside OUT〉

목 차

1. 새 터 / OT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이유

2.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알아보기

3. 공동체 대표들을 위한 사건 지원에
필요한 태도

새터/OT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이유

- 성평등 자치규약의 의의

2월, 학내 곳곳에서 분주하게 새내기를 맞이할 준비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떤 놀이문화, 공동체 문화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을까?’ 등등의 고민으로 학내 단대/반에서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새터를 준비한다. 새내기들에게 있어서 새터란 자신이 속한 단대/반의 공동체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자리이자, 그 문화에 대한 적응과 고민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정든내기들에게 새터란 단대/반의 공동체 문화를 소개하고, 공유해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이처럼 새내기와 정든내기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서 제정되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새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이 바로 성평등 자치규약인 것이다.

새내기, 정든내기를 불문하고 학내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가장 많이 접하는 때는 바로 새터일 것이다. 성평등 자치규약과 관련한 자료집, 포스터, 그리고 反성폭력 교양 강의까지.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새터에서 집중되는 것은 새내기와 정든 내기가 함께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일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과 인지가 전제되어야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성폭력이 분명한 범죄행위로서 공동체 내부의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은 새내기, 정든내기에게 단순히 피해야 할 행위들의 목록이 아닌 내 안의 성/성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부터 ‘성폭력이 왜 공동체 모두의 문제인가.’ 까지를 함께 논의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성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 했을 때 모두가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들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새터에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성폭력을 어느 정도 미리 방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새터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에서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운 새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학운위원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이전에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성평등 자치규약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치규약에 명시된 학생회의 의무조차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새터가 진행된다면, 이는 분명 ‘공동체 문화’라는 명분 하에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제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터를 준비함에 있어 ‘이성애중심주의, 나이권력, 학번권력 등의 ‘권력’을 통한 ‘배제’를 공동체 문화라고 보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여, 새터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다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대학 문화, 공동체 문화 속에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2007 성평등 자치규약을 보도록 하자.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알아보기

2000년도부터 학내 공동체 안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이라는 공동체의 약속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속적인 반성폭력에 대한 고민으로 2006년 6월 확대 운영 위원회에서 3차 개정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부터 3차 개정안인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 규약>(이하 자치규약)이 적용되었다. 자치 규약에서는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자치규약 적용에 있어서 문제시 되어 왔던 나이·학번 권력 그리고 성소수자 폭력을 근절하고자 이성애 중심주의 조향을 추가하였다. 19대 총학생회는 이 내용이 각 기초단위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되고 공유되기를 바라며,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 자치 단위 연대>에서 진행되었던 개정안에 대한 의의를 2007년 첫 확대 운영 위원회 자리에서 발제하고자 한다.

성폭력의 개념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은 성폭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2-1. 성폭력의 개념 중

공동체 내의 성폭력은 단순히 자치규약에서 제시되는 몇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절되지 않는다. 여성/남성의 관계에서 동의/요구의 주체가 일방적인 상태로 지속되거나, 동성애자/이성애자에 대해 정상/비정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성폭력과 떨어지지 못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우리의 일상,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왔던 젠더 권력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젠더 권력 관계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의 성과 이성에 관계만을 정상으로 상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성에 따른 고정된 성별 역할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설거지하는 어머니와 신문 보는 아버지를 보고, 동성애라는 감정을 변태적 성행위의 하나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젠더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젠더 권력 관계를 재생산해내며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남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에 대한 고정적인 역할과 이성애만이 정상임을 아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상/비정상, 옳음/그름은 그 시대의 가치 판단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화한다. 지금 사회의 가치판단과 이데올로기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개인의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성폭력을 당연한 ‘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폭력은 일상에서의 문제제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려우며,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나이·학번 권력

성폭력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해왔던 것 중에는 나이·학번 권력이 존재한다. 나이·학번 권력은 평등한 관계가 아닌, 누군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의 시작, 과정, 결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이다.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체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이름·나이·학번을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름·나이·학번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체 내부에서 나이·학번은 너무나 큰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나이와 학번은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존중이 아닌 무조건적인 권력으로서만 작용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권력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치규약 적용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가해를 부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문제적인 언행을 나이·학번 권력으로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성폭력 사건 예방을 방해할 것이며, 그 태도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이성애자로 간주하며, 이성애자만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한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에게 “남자 친구 있어?” 남성에게 “여자 친구 있어?”라고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이성애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삶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이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 비이성애를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비이성애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서 간주하며 ‘포용’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성애자로서의 권력을 갖고 비이성애자들을 ‘인정’하려는 것은, 오히려 ‘인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이성애자로만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비이성애를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나,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 모두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이성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왜 이성애는 당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으며, 왜 비이성애는 ‘비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웃음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성폭력, 나이, 학번 권력, 이성애중심주의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사회는 성폭력, 나이, 학번 권력, 이성애중심주의를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언제나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을 억압해왔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확운위원분들께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고 계시고, 이런 억압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선은 스스로 자신 안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성, 이성애 중심성, 나이 중심성에 한번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함께 가져보기 바란다.

• 참고

2005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위한 새터 反성폭력 내규이야기

공동체 대표들을 위한 사건 지원에 필요한 태도

선행되어야 함에도 간과되어온 피해자 중심주의

공동체, 혹은 개인 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지원자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건 지원자는 대표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피해자의 지인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누가 되든지, 성폭력 사건의 지원과 해결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며 이에 따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건 처리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의 증언과 경험이 의심받고 이를 끊임없이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현상은 성폭력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특징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여도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인정받더라도 비난 받는 경우와, 성폭력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비난이 그러하다. “왜 하필 그런 자리에 갔었는가?” “네가 좀 예민한 것 같다” “즉시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면 될 것 아니었는가?” “나는 그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했을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비난들이다.

사건을 어떻게 느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이자 기준은 피해자 자신이다. 피해자가 듣게 되는 위와 같은 비난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피해자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 및 사회 구조가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언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한 피해자에 대한 호의나 안타까움으로 한 말들이라고는 하나 역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에서 나온 말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2차 가해가 될 소지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의 1차적인 가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2차 가해란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자에 대해 비난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받은 가해보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사회 구조는 피해자에 대한 호의가 결코 호의가 될 수 없는 가해로 작용하도록 하나의 피해자 상(像)을 형성하고, 피해자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주체인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없이 설명할 수가 없게 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사회에서 수용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이 일치하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과 거듭되는 2차 가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험을 부정하고 ‘하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경험을 말하는 건 도전적이면서 어려운 일이 되며, 사건 지원과 해결은 힘겨운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과연 이것이 성폭력일까’라는 의문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는 이런 모습이다,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지 않는 피해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일상화된 사회’가, 사건의 중심이고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의 피해자를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로 이루어져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인 힘과 견고한 고정관념을 생각해 본다면, ‘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행동(혹은 말)은 성폭력이 아니었다’라는 가해자의 말 한 마디로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이 무시되고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사고가 산재한 일상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고 명명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함을 겪게 된다.

성폭력이 ‘폭력’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도 대다수가 쉽게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것이 다른 유형의 폭력과 구별되는 부분은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점이다. 성폭력이 어느 정도로 위중한 범죄인지, 그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요인 중에는, 피해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성찰 없이 자신의 기준과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익숙하다는 지점이 있다. 사건의 상황에 대해 가장 믿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리고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판단 등을 존중하는 것은 정확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성폭력 사건 지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때 지원자는 진술서, 녹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을 시작할 경우, 초점을 잘못 맞춰서 피해자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피해 상황을 되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사건의 ‘중재’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자리에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판단이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와의 접촉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자며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할 권리는 없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또한 정식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함께 해결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지원자 외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야기를 듣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피해자의 경험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함께 사건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할 수도 있고, 얼굴을 마주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지원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편해할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의 활동 범위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경우 피해자의 불편함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사건 해결방식에 대해 서로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해야 한다.

새터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 그래서 사건해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가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2차 가해에 속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성별권력과 같은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와 해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두려워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며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환기시키고,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단과대 혹은 과/반 학생회에서 성폭력 상담실과 총여학생회의 자문을 받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때 가해자가 속한 단위의 주체는 2차 가해를 예방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 과/반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실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실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방법은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나뉜다.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사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으로 남고 공개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공식적인 해결'이 그것을 확대하거나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은 공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어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교수, 교직원, 학생 위원으로 이루어진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사건이 회부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이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실명공개 등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 참고

2005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위한 새터 反성폭력 내규이야기

2006 모두가 즐거운 공동체를 위한 자치규약 이야기